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 실시 의무 부과 〉

■ 박정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618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 실시 의무 부과(안 제17조의2 신설)	3
※ [참고] 지원센터 심리상담 사업 개요 및 실적	10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정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2. 5.

다. 회 부 일 : 2026. 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 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위험은 대중문화예술인뿐만 아니라 매니저, 제작스태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등 현장 종사자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주로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자,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대중문화예술산

업 전반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 실시 의무 부과(안 제17조의2 신설)

개정안은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②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2(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상담)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 2.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 3.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현행	개정안
	<u>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u> ② <u>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른 교육 실시의 대상·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배치기준·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17조¹⁾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항).

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 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4.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5.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6.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센터는 ①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② 불공정 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③ 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④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⑥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⑦ 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함(제2항).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원센터로서 대중문화예술인 심리상담, 대중문화예술산업법률자문, 대중문화예술 정책 연구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²⁾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중문화예술현장은 악성 댓글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근무환경, 직장 내 괴롭힘과 갈등,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현재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련 지원은 주로 지원센터 등의 일회성·임의적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지원 체계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

2) 자세한 내용은 [참고] “지원센터 심리상담 사업 개요 및 실적” 참조

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이하 “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라 함)로 하여금 ①-1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 ①-2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인, ①-3대형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② 위 교육대상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사를 두거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구성원 전반을 위한 상시적 심리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① 해당 의무를 개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 대중문화예술용역은 계약의 형태, 내용과 활동 기간이 매우 다양한데, 업종 구분 없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전체에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경우 단기 제작 용역과 같은 일시적 고용 관계 종료 시 단기 지원에 그칠 수 있으며, ③ 현재 지원센터를 통

해 심리상담·법률자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④ 「예술인 복지법」 제8조³⁾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도 예술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유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한국매니지먼트연합⁴⁾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매출 규모 변동성을 고려할 때 매년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등 관리가 어렵고, 대형 대

3)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4의2.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각 목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4) 2016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신장과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정당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중문화예술사업자와 중소형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간극 발생으로 중소형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현행 지원센터의 심리상담 등 지원사업의 규모 확대가 보다 실효적이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국방송협회는 현행법 제17조5)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 등의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은 정부의 책무로 이를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개정안은 기획업자뿐만 아니라 제작업자까지 포괄하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⁶⁾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제작업자에게 콘텐츠 제작 외 책임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마지막으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지 않게 법령에 획일적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참여 부족이 우려되므로 각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고,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및 근로자 외 외주 용역 또는 용역 수탁자를 포함할 경우 비용 및 업무 부담으로 산업 발전을 저해할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지원센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6)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로 구분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대중문화예술사업자”란 대중문화예술제작업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심리상담사를 배치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⁷⁾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79

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385호)

□ '24~'26년 지원센터 심리상담 사업 개요

- (사업명)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 대상 심리상담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4년	360백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 심리상담 1,883회(221명) 진행
'25년	410백만원		- 심리상담 2,269회(277명) 진행
'26년	410백만원		- 심리상담 2,000회 이상 진행 목표

- (목적) 대중문화예술인 및 연습생의 우울증 예방 및 스트레스 관리
- (사업근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 제2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지원센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 (사업 대상)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 (신청 자격) 연예기획사,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 *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상담 시간 및 장소는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
- (주요 내용) 대중문화예술활동 과정의 정서 조절, 스트레스 관리, 우울, 불안 등에 대한 1:1 비공개 개인상담 및 예방적 집단상담 실시
 - * 개인별 상담횟수는 심리상태 등에 대한 상담사 판단과 상담대상자 의견에 따라 조정
- (추진 체계) 민간위탁(위탁사업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 2025년 지원센터 심리상담 세부 실적

- (운영결과) 2,269회, 277명(개인상담 2,253회, 256명, 집단상담 16회, 21명)
 - 만족도: 9.7점(10점 만점) * 매 회기 조사 진행, 개인상담 총 2,253회 중 842건 응답
- (심리상담 전후 대비 효과)
 - 총 10개 영역(회복탄력성, 자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불면, 음주 등)에서 모두 개선되었으며, 특히 회복탄력성(5.6점 증가), 우울(7.5점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개선
 - 상담 전후 대비 위험군은 11.7% 감소하였으며, 심리적 어려움이 크지 않은 정상군은 11.7% 증가하여 심리상태가 대폭 개선된 것을 확인